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나21349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나21349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1가단11238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람

담당변호사 장종환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성득

변론 종결 2024. 5. 16.

판결 선고 2024. 5. 30.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1가단11238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중 피고에 대한 부분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1997. 12. 8. 접수 제1637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함종식

판사김혜령

판사홍유정

별지